

#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5년 2월 13일  
행정재경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5년 1월 23일, 운영희 의원
- 나. 회부일자 : 2025년 1월 23일 회부
- 다. 상정일자 : 제25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최 중  
제1차 행정재경위원회(2025년 2월 13일)
  -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심사, 의결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

### 가. 제안이유

- 서울특별시 금천구가 관리하는 공유재산(토지)에 대하여 구민들이 알 수 있도록 표지판 설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유재산을 보호·관리하고자 함.

### 나. 주요내용

-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 ~ 제2조)
- 적용범위(안 제3조)
- 표지판의 설치 등(안 제4조)
- 표지판의 규격(안 제5조)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가. 검토보고 : 전문위원 박병규

나. 검토의견

- 본 제정 조례안은 우리구가 관리하는 공유재산 토지에 대하여 구민들이 알 수 있도록 표지판 설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유재산을 보호·관리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,
  - “공유재산”이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, 기부채납(寄附採納)이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재산으로서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·일반재산으로 구분됨.
- 동 제정안은 총 5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
  - 안 제1조에서는 본 제정 조례의 목적에 대해서,
  - 안 제2조에서는 ‘공유재산’과 ‘공유재산 표지판’의 정의에 대하여,
  - 안 제3조에서는 이 조례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4조제1항제1호1)에 따라 금천구가 관리하는 토지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이 조례의 적용범위에 대하여,
  - 안 제4조에서는 표지판의 설치와 그 내용에 대하여,
  - 안 제5조에서는 ‘표지판의 규격과 형식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’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
- 참고로 성동구는 2025년 1월 2일 조례를 제정하였고, 소관 부서인 재무과는 해당 조례에 따른 표지판 설치 및 영조물 보험 가입 비용을 15백여만원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.

---

1) 제4조(공유재산의 범위) ① 공유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부동산과 그 증물(從物)

○ 표지판 설치관련 우리구 예산 소요액 추계 : 15,060천원

- 표지판 제작: 251필지(1,000㎡이상 토지) × 55,000원 = 13,805천원

- 영조물 보험: 251개(1,000㎡이상 토지) × 5,000원 = 1,255천원

※ 구유 토지 총 1,388필지(행정재산 1,316필지, 일반재산 72필지)

- 재무과는 일반인과의 분쟁 가능성이 있는 나대지 또는 임야의 초입 부분 등 전체가 아닌 구유지임을 알릴 필요가 있는 토지 일부에 한하여 표지판 설치하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관련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.
- 공유재산법 제6조제1항2)에서는 누구든지 공유재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하도록 하여 공유재산을 보호하고 있습니다.
  - 본 제정안은 이러한 이유로 공유재산 토지에 표지판을 설치하여 구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공유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상위법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
  - 다만 사유지와의 경계로 인한 민원발생 우려에 대해 해당 부서에서는 이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.
- 본 제정안에 대하여 관련 규정과 자료를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2) 제6조(공유재산의 보호) ①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.

② 행정재산은 「민법」 제245조에도 불구하고 시효취득(時效取得)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론요지 : 생 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